

2025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공고

(재)제주콘텐츠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내 콘텐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5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을 추진 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 5. 26.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주 콘텐츠 산업 성장 및 청년 인력 양성 동시 지원 사업으로, 기업 채용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도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12.31.
- 지원대상 : 산업현장에서 CT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분야의 도내 기업 중 청년(2025.1.1.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단체(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신청일 기준 대표자 제외 근로자 1명 이상(4대보험 필수가입) 기업 대상

※ CT기술 : Culture Technology의 약자로 문화산업기술을 의미함. 애니메이션, AR·VR, AI 응용기술, 문화복원 기술 등 첨단문화기술 뿐 아니라 디자인, 공예 등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문화기술까지 포괄

- (채용)지원분야 : 콘텐츠 분야 직무 전반
 - AR, VR, 5G, 빅데이터, 3D 코딩 등 첨단 CT기술 결합 직무
 - 기획, 디자인 등 콘텐츠 활용 홍보·마케팅 직무
 - 공연, 전시 등 공간형 콘텐츠 기획·개발·연구·운영 직무
 - 기타 영화, 음악, 게임, 방송영상,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직무

○ 지원인원 : 총 150명

※ 신청 기업별 평가를 통해 지원 인원 확정 및 배정
 ※ 선정 이후 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 인건비 지원 : 최대 월 180만원(~25.12.31.)

※ (신규)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 시 정규직임을 명시해야 하며, 협약체결 이후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읍·면 지역 기업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 최대 월 10만원

사례	교통비 지급액
행정시 동지역외 읍·면 지역 거주자가 다른 읍·면지역으로 출근	월 10만원
동일 읍·면 지역 내에서 출근	월 5만원
행정시 동지역에서 타 행정시 동지역으로 출근 (예시) 제주시 이도2동 거주자 → 서귀포시 동홍동 출근	지원불가

- 사업 참여청년 대상 직무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참여청년은 진흥원 주관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기업은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일정

사업 추진	일자리 지원	점검·관리	역량강화	성과확산
사업 공고 및 도내 기업 선정	▶ 지원기업 별 청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 기업 현장 점검 및 참여 청년 인터뷰	▶ 참여청년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성과점검 및 차년도 채용 수요조사

※ 청년 채용은 지원기업에서 직접 진행하며,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매칭에 관여하지 않음

3 세부 지원내용

○ 기업별 지원 인원 산정방식

-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의 50% 범위 내 지원(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별 신청 인원과 실제 배정(지원) 인원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필수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4대 보험 의무가입)
 - ※ 주 5일 근무 외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가능
- (최소)근무기간 : 협약 후 채용일로부터 ~ 2025.12.31.까지
- 임금 : 최저임금 기준 1인당 월 2,096,270원 이상 지급(기업부담금 최소 10% 이상 자부담 필수, 4대보험료 기업 부담분 별도)
 - ※ 임금(월 보수액)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월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함
 - ※ 추후 근로계약 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불가

○ 참여청년 인정범위

연령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1. 기준 만 19세 ~ 39세 (1985.1.1. ~ 2006.12.31. 출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 가능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지원연령상한	1984년생	1983년생	1982년생	
고용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지역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하고, 사업참여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유지해야 함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기업이 채용인원에 대해 매월 급여일에 선 지급 →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등)를 포함한 청구서류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검토 → 지원 기업 대상 지원금(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25.5.26.(월) ~ 2025.6.13.(금)
- 접수기간 : 2025.6.2.(월) ~ 2025.6.13.(금) 16:00까지 / 12일간

○ 접수방법 및 접수(문의)처 : 이메일 접수(abc@ofjeju.kr)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콘텐츠인재팀 장수환 선임연구원	064-735-0641	abc@ofjeju.kr

- ※ 제출서류(양식)는 진흥원 누리집(<http://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 ※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제출)으로는 일체 접수 불가하나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접수 가능(제주시 신산로82 지하1층 제주콘텐츠코리아랩)

○ 제출서류 : 제공 신청양식을 활용하여 유의사항 확인 후 작성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지원사업 신청서	직인 날인 필수
2	지원사업 참가 계획서	-
3	참여기업 확인서	자필서명 필수
4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자필서명 필수
5	평가위원 추천표	직인 날인 필수
6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7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한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 증명서	
9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24년 기준)	
10	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	입주기업확인서는 인프라 발급

-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원본 한글파일과 함께 제출
-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첨부파일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 있음
- ※ 제출서류는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 및 선정

- 평가대상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도내 기업
- 평가일정 : 2025년 6월 중 (※ 진흥원 내·외부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 15인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3회의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서면 평가 진행
 - 최저, 최고점 포함 산술평균 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 기준 점수(60점 이상) 조건에 부합한 예비 지원기업을 별도 선정하여 사업 참여자격을 순차적으로 부여(선정기업의 자진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선정이 취소될 경우 등 포함)
- **평가기준** : 채용 필요성 및 기업 안정성, 고용계획의 우수성

평가항목	내용	배점
채용 필요성	· 사업 신청 배경 및 현재(향후) 기업에 신규인력 필요한 내용	10점
기업 안정성	·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및 안정성 · 향후 성장성 및 비전 등 시장 경쟁력 및 기술력 · 기업의 지속성 여부 및 회사 규모, 직원 수 등	40점
고용계획의 우수성	· 급여 등 근로조건외의 우수성, 채용 인원 수 · 채용인력 운용계획(업무 수행계획, 인력관리방안 등)의 명확성 · 근로환경, 노사관계, 복지 수준, 일·생활 균형, 직원 자기개발 장려 등 고용유지 노력 정도	50점
합계		100점
우대가점	· 2023~2025년도 진흥원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2점) · 진흥원 입주기업(제주CKL,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2점) · 진흥원 온라인캠퍼스 ESG 강의 이수기업(대표자 등) (1점) · 인증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1점), 여성기업 인증기업 (1점)	최대 5점

※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선정기업 수 혹은 목표치에 미달될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모든 우대가점 사항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인정되며,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6 기타사항

- **지원제외 및 참여제한**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여제한 기업 (※ 기타사항은 '붙임3. 참여기업 확인서' 내용 참조)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사업자
 - 단, 4대보험 적용제외 비영리 단체 및 법인은 가능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자(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적용)
- 제주콘텐츠진흥원 관련 협약·계약 위반 또는 체납 이력 등이 있는 사업자
- 채용 대상 청년과 기존 근로 관계가 있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
- 사업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자본잠식 상태 등)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자(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법인, 금융 등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제재 종료 후 1년 미만인 경우 포함)

참여제한 청년

- 국가 및 지자체, 타 기관 인건비 유사 사업 신청 및 수혜 근로자,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 단순 상담, 단순 노무 일자리 지원 제외)
- 참가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 결혼이민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 예정자 또는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직무가 아동·청소년 관련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노인 관련일 경우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청년으로 선발될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함(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 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 및 참여청년 관리

- 기업 현장 방문 및 사업 참여자(채용인력) 분리 면담
- 기업별 점검(현장점검 및 채용인력 인터뷰 등) 진행
- 현장점검표(양식)의 점검내용을 중심으로 면담 진행
- 지원기업 : 협약서 이행, 사업장 요건(임금체불, 이해관계, 부적정 사업장 등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 참여청년 : 근로계약서, 담당 직무, 근무환경(노동시간, 부정수급 발생여부, 처우 등), 사업참여 종료 후 재직 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참여 근로자로 고용하기 위한 관련 서류, 참여 근로자 고용 관련 서류, 참여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시간 산정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 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등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봄